

조사보고

**최근 중국무역통상 및
투자정책 동향**

2007. 12

한국무역협회
북 경 지 부

〈 목 차 〉

I. 중국의 對韓수입규제 동향 1

1. BPA 반덤핑 최종판정
2. 아크릴산 에스테르 반덤핑조치 만기 사전공고
3. 염화메틸렌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4. SBR 중간재심 판정
5. 아세톤 예비판정
6. 한중간 무역마찰

II. 최근 무역통상 및 투자 관련 정책, 입법 동향... 4

1. 신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07년 개정) 공표
2. <수출기업 환경 감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 공표
3. <장려수입기술과 제품목록> 및 수입어음 할인방안 공표
4.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조만간 공표 예정

III. 200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신규정책 동향..... 6

1. 노동계약법
2. 취업촉진법
3. 기업소득세법

I. 중국의 對韓수입규제 동향

1. BPA 반덤핑 최종 판정

-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29일자로 한국, 일본, 싱가폴 및 대만산 BPA(HS코드: 29072300)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공표
 - 1) **금호P&B화학 : 5.8%**, 2) **LG석유화학 : 6.4%**
 - 3) **기타 한국회사 : 37.1%**
- 5~6% 수준의 반덤핑세율을 부과한 동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판정이라고 예상되며, 한국업체의 기존 수출에 일정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향후 연례재심 등 과정을 거쳐 보다 낮은 반덤핑세율을 쟁취할 가능성도 있어 수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아크릴산 에스테르 반덤핑조치 만기 사전공고

- 10월 10일자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풀, 인도네시아산 아크릴산 에스테르(HS코드: 29161200)에 대한 5년 반덤핑 조치가 2008년 4월 10일자로 만기 예정을 사전 통보하는 공고문을 공표
 - <2003년 4월 10일자 공표된 최종판정 내용은>
 - 1) **LG화학 : 2%**, 2) **기타 한국회사: 20%**
- 중국내 제소산업이 반덤핑조치의 만기일의 60일전인 즉 2008년 1월말까지 상무부에 일몰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동 반덤핑조치는 만기일로부터 종료됨. 동 제품은 중국내 공급의 급증으로 제소산업이 재차 일몰재심 신청을 할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원심 대응 업체인 LG화학인 경우 2%의 저세율을 부과 받은 관계로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3. 염화메틸렌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 중국 상무부는 2007년 8월 14일자로 한국, 영국, 미국, 네델란드, 독일산 염화메틸렌(HS코드: 29031200) 반덤핑조치를 2012년 8월 14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일몰재심 최종판정을 공표

1) 삼성정밀화학 : 4%, 2) 기타 한국회사: 28%

— 중국의 일몰재심은 유럽과 유사하여 반덤핑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철회 여부만 판정하기 때문에 일몰재심의 결과는 원심과 동일함. 따라서 원심 및 일몰재심의 최저 반덤핑세율을 부과 받은 삼성정밀화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팬찮은 결과라고 사료됨

4. SBR 중간재심 판정

-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1월 21일자로 금호석유화학의 신청에 따른 SBR 중간재심 판정을 공표하였음. 판정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반덤핑세율은 원심의 7%에서 2.9%로 하향조정되어 수출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의 좋은 결과라고 사료됨

5. 아세톤 예비판정

-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1월 22일자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공표하였음.

동 예비판정에 의하면 한국 회사는 다음과 같은 덤핑마진율을 적용하게 됨

1) LG화학 : 5.0%, 2) 금호P&B화학 : 10.9%

3) 기타 한국회사 : 52.9%

- LG화학의 경우 대응업체의 최저 덤핑마진으로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호P&B인 경우 보다 낮은 덤핑마진율을 위하여 12월에 진행되는 현지실사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최종판정 후 중간재심 등 절차를 통하여 저율의 반덤핑세율을 쟁취함이 바람직함

6. 한중간 무역마찰

- 금년도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건의 반덤핑 조사만 개시한 데 비해 한국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7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음. 예전에는 한국상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으나 향후 중국산 제품도 한국으로 대량 수출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무역마찰도 불가피함

II. 최근 중국의 무역통상 및 투자정책 동향

1. 신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07년 수정) 공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07년 10월 31일자로 신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을 공표하였음. 동 목록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04년 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음.

- 同 목록은 1995년 최초로 공포된 이후 금번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제한·금지 등 3단계로 분류함

<新지도목록 주요내용> 장려 업종

- 환경보호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설비 분야
- 하이테크 기술·신소재·선진의료설비 생산 분야
- 고속도로·철도여객 운송 등 인프라 건설 분야
- 현대 물류업 및 공공시설 관리 분야
- 시스템 관리·인력자원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제한 업종- 일반선박의 수리·설계 및 제조 (중국측 다수 지분)
- 송전망 건설 및 경영 분야 (중국측 다수 지분)
- 부동산 매매 및 중개 서비스 분야
- 선물, 증권(외자지분 1/3 미만) 및 신용평가 서비스 분야
- 문화·체육·연예 사업(중국측 다수지분으로 합자에 한함)
- 화물리스·대외무역 등 도소매 관련 무역업금지 업종- 희소광물·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 및 생산 분야
- 측량·항공 촬영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
- 환경오염 및 인체줄기세포 등 특수 연구 분야
- 골프장 건설·경영 및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분야

※ 금번 “지도목록”의 수정은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무역흑자 조정 및 자국 산업고도화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투자 장려 업종을 중심으로 외자 기업의 신규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양후 중서부 지역이 새로운 투자 유망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2.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 공표

- 상무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7년 10월 7일자로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문을 공표하였음.
 - 동 통지에 따르면 환경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간 수출 퀘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면허증 발급을 중단하게 됨
 -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이 7000개 이상인 데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여론도 확산돼 이번 조치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3. <장려수입기술과 제품 목록> 및 수입어음 할인방안 공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을 발표한데 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수입어음 할인방안을 확정하여 공표하였음. 중점 내용은 목록에 포함된 주요제품 수입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어음할인을 지원한다는 것임.
- 주요 지원대상은 자동차 등 장비설계제조,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개발, 화공 등 생명공학분야, 농업분야 등의 선진기술과 철강가공, 야금·제련, 광물채굴, 가공, 선박, 항공분야 등임.
- 이번에 발표된 수입장려기술 제품 목록은 최근 발표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과 함께 향후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를 받고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4.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공표

-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新기업소득세법의 실제 적용을 위해 2007년 2월 11일자 총 75조항으로 구성된 新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을 발표했음. 新기업소득세법 실시 이후 각종 우대혜택이 철폐돼 기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실시세칙과는 별도로 6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대상 산업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 세수우대혜택 대상산업은 하이테크업종, 안전생산업종,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업종, 농림업 등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가세무총국의 세금 우대혜택대상 산업 리스트에 포함되는 산업은 新기업소득세법이 실시된 후에도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III. 200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규

1. 노동계약법

- 노동력이 과잉공급 상태인 중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사측이 강자의 위치에 있는 관계로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 중재 건수도 매년 급증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2007년 6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된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침해 방지에 입법초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1994년에 기업 경영효율을 우선시하여 제정된 현행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고용 유도

- 단기 노동계약의 체결회수 제한
 - 단기계약 2회 연속체결후, 3차 계약 갱신시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
- 파견노동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체결 의무화
 - 파견노동자와 최소 2년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

나. 노조의 노동자 권리보호 기능 강화

- 사내규칙 제정시 노조와의 협의 의무화
 - 취업규칙 등 제정시 노조(또는 직원대표)와의 협의 의무화
 -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법적 유효성 상실
- 노조에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
 - 기업-노조간 평등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 노조와의 집단계약(단체협상) 체결이 사실상 필수화됨

다. 노동자의 해고 요건 강화

- 시험채용 기간중 임의해고 제한
 - 채용조건 미부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없이는 임의해고를 금지

- 노동자 해고시 사전 노조와의 협의 의무화
 - 노동자해고시 사전에 노조통보 의무화 및 노조에 의견 제출 권 부여
- 정리해고(인력 감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20인 이상 감원시 노조협의를 의무화하고, 감원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
 - 정리해고시는 장기 계약체결자, 생활곤란자 우선 잔류원칙을 규정

라. 노동자의 직업선택권 제한행위 규제

- 노동계약시 위약금 약정행위 제한
 - 「연수훈련후 의무복무기간」 및 「경업제한(경쟁업종 취업 제한)」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 허용
- 인력채용시 보증금 수취 금지
 - 노동자의 무단이직 방지를 위한 보증금수취 및 신분증 강제 보관 행위 금지

마. 노무파견형태의 고용 규제

- 파견노동력의 사용부문 제한
 -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파견노동자 사용을 제한
- 파견노동자 권리침해시 연대 배상책임 부과
 - 노동자에게 손해발생시 노무파견회사와 사용업체에 연대배상책임 부과

바. 노동계약 이행 관련 처벌규정 강화

- 노동당국의 감독관리 대폭강화

-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배상금, 벌금규정이 명확히 규정됨
- 노동자들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노동중재 대신 노동당국에 대한 고발을 통해 노무분쟁 해결 가능

< 배상금 부과 >

- 1개월~1년 이내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 2배 임금 지불
- 무기한노동계약 미체결: 체결의무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월급의 2배를 지급
- 시용기준 미 이행: 월 임금기준 배상금 지불
- 위법 해고: 경제보상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

< 벌금 부과 >

- 인력채용시 담보와 보증금요구, 증명서 강제보관시 5백~2천원
- 노무파견회사의 위법행위: 파견노동자1명당 1천~5천원 이하
- 경제보상금의 적기 미지급: 50%-100% 과징금 부과

※ 그동안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하시는 세제우대정책과 저렴한 노동력에 힘입은 바가 크나 2007년 기업소득세 통일법안에 이어 이번 노동계약법의 통과로 세제혜택이 감소되고 노동코스트가 상승됨 따라,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투자 진출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2008년 1월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 인건비 상승은 물론 노조와의 협상업무와 노동분쟁 증가로 노무부담도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투자기업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법 환경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재조정하고 인사노무 관리체제를 정

비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취업촉진법

- 2007년 8월 30일 취업촉진법은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됐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됨. 그 주요내용은
 - 정부는 취업확대를 경제사회발전의 우선적 위치에 놓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되 근로자-자주적 직업선택, 시장-취업조절, 정부-취업촉진의 방침을 유지함
 -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공유제경제의 발전과 여러 경로와 방식의 일자리 증가를 장려함
 - 취업촉진에 유리한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취업전용자금을 배분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함
 - 취업전용자금은 취업관련 업무, 사회보험 등 보조금, 소액담보대출 등 지원에 사용함
 - 도시와 농촌, 지역간 취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평등취업제도를 수립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전 취업을 지도함
 - 여성근로자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 각급정부는 공공서비스 취업서비스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기구를 설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기업소득세법

- 2007년 3월 16일에 기업소득세법은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표결 통과됐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가. 세율 통일

- 2008사업연도 결산부터 25% 적용(33%지역 기업, 공표후 신설 기업)
- 경감세율 적용
 - 하이테크기업 : 15%
 - 중소 영세기업 : 20%

나. 기준 세제우대 폐지

- (1) 15%, 24% 경감세율 적용 폐지(5년 과도기간 둠)
- (2)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5년내 잔존기간)
- (3) 수출비중 70%이상 생산형기업의 2면3감 종료후 계속 적용하던 50%감면세는 과도기 없이 2008년부터 폐지

다. 과도기 이행기간 (2007.3.16 신법공표전 설립기업)

- (1) 저세율(15%, 24%) 적용을 받던 기업은 5년 과도기(매년 2%씩 인상)
- (2) 정기 감면세(2면 3감) 기 수혜기업은 잔존기간만 적용
예) 기 3년 혜택을 받은 기업은 남은 2년간 적용후 감면기간 만료
- (3)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008년부터 감면세 수혜기간을 기산함

라. 우대세제 유지분야

(1) 산업우대 중심

- 첨단, 친환경, 에너지절약산업, 창업투자기업
- 1차산업(농/임/목/어업) 기초시설투자
- 인프라 산업(항만,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댐 등)

(2) 지역우대 보완

- 경제낙후지역, 소수민족지역, 자연재해지역

마. 과세소득의 稅前 공제항목 통일

- 인건비, 기부금, 광고홍보비, 가속상각 등 각종 손비 처리항목에 대해 내외자기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바. 특별납세조정(반조세회피 규정) 제8장에 명시

(1) 기존의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기관의 조사관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과소자본세제, 추징금 및 가산이자 규정
- 특히 독립원칙과 불부합하거나, 합리적 영업목적이 결여된 거래로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 누락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

(2) 이전가격과세조정 관련 현행 행정규정(국세발[2003]47호)

-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3년이내,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조정가능, 일반적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됨

사. 기타

(1) 납세의무자를 현행 「독립채산의 경영단위」에서 「법인」으로 명기

- 법인세 체제로 전환한 바,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은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법 적용

(2) 법인을 거주기업과 비거주 기업으로 구분

- 거주자기업은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 비거주자기업은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짐

※ **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고, 기존 외자기업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세금 혜택을 받던 생산성 외국기업은 혜택의 중지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